

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문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

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9조(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른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이사감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.

2019. 9. 20.

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

1. 공 고 명 :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문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19. 9. 20. ~ 10. 19.
3. 공고대상 : 붙임 명단 참조(125명)
4. 공고방법 :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
5. 공고 내용

가.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9조 및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81조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(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)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,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서와 함께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적성검사기간 내에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(주소관할청)로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.

<구비서류>

- 1)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
- 2)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컬러사진(3.5cm×4.5cm) 2매
- 3) 신체검사서(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2년 내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내역서로 대체 가능)
- 4) 수수료 2,500원

나. 기한 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8조에 의거 면허가 취소되거나 동법 제44조제1항 제1의2호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다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(☎ 031-940-5919/5911/591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